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1가단14924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루츠

담당변호사 이희경

변 론 종 결 2023. 7. 11.

판 결 선 고 2023. 8. 22.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2,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7. 5. 18.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에게 5,000만 원을 여신기간 만료일 2020. 5. 19., 이자율 연 5%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었고, E의 대표이사였던 C은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나. D은 2021. 8. 27. 원고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D의 E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E에 그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원고가 양수한 위 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

다. C은 2017. 7. 25. 아들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E는 2020. 4.경부터 D에 대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 납입을 연체하였다.마. 원고의 E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은 2021. 10. 21.을 기준으로 30,202,806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전인 2017. 5. 18. D이 E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C이 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D의 C에 대한 연대보증 채권이 성립하였고 원고가 이를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C의 채무초과 상태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C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파주시 F 토지, 파주시 G 토지, 파주시 H 토지, 파주시 I 토지가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약 275,988,300원 상당(2017년도 공시지가 기준)이고, 파주시 J리 4필지 토지의 총 가액은 약 862,855,300원 상당으로서 적극재산 가액이 합계 약 1,138,843,600원 상당에 이르는 사실,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C의 소극재산으로는 C 개인의 대출금 채무 2억 5,000만 원, 보증채무 4,090,921,000원 등으로서 소극재산 가액이 합계 4,340,921,000원 상당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피고는 C의 채무는 대부분 E의 채무를 보증한 것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무렵 E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 사건 대출 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상환을 성실히 하고 있었으며, E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점이 C의 채무초과 상태 판단 여부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주채무에 관하여 채권자 앞으로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다13246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따라서 연대보증인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대대로 제사를 지낼 종손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형성된 재산으로 C도 선친인 K로부터 증여를 받았고, C 역시 제사를 지낼 아들인 피고에게 이를 증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증여계약의 경위가 피고의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원상회복의 방법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참조).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인 2019. 6.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66,685,330원, 근저당권자 국민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C에게 반환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로서는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2)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1. 10. 21.을 기준한 원고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30,202,806원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민경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토지

경기도 파주시 대 473㎡

2. 건물

경기도 파주시

위 지상

시멘트벽돌조 시멘트와즙 평가건 2층 주택

1층 80.39㎡

2층 80.39㎡

- 이 상 -

